

횡성군 공고 제2026-1226호

공 시 송 달 공 고

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 제5조 및 제48조 제3항(과태료)에 의거 의무보험 미가입 또는 지연가입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, 과태료 본부과,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불명,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공 고 명 :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과태료 고지서(사전,부과,독촉)반송에 대한 공시송달(26년 7월1차)

2. 공고기간 : 2026. 7. 20. ~ 2026. 8. 4.(15일간)

3. 공고대상 : 불임내역 참조

4. 안내사항

(1) 납부의무자는 횡성군 도시교통과 교통지도팀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최초 3%의 가산금 및 매월 1.2%의 증가산금이 60개월 동안(최대)부과되며 「국세징수법」 제33조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(2) 상기 과태료처분 대상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고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횡성군 도시교통과 교통지도팀에 방문하거나 우편, 팩스(033-340-2589)를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, 이의를 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.

(3) 과태료 사전부과기간(의견제출기한) 동안 사전부과 처분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도시교통과 교통지도팀에 방문하거나 우편, 팩스(033-340-2589)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4) 의견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,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.

5. 문 의 처 : 횡성군 도시교통과 교통지도팀 ☎ 033-340-2656

2026. 7. 20.

횡 성 군 수